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이필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0
------------	-------

발의년월일 : 2017. 3.

발의자 : 이필례, 김윤정, 김효식,
백남환, 서종수, 신종갑,
송병길,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 차재홍, 허정행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라. 비용의 보조와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3. 관계법규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17. 3.2. ~ 3. 6.(제출된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

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22호, 2016.5.29.,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